

제 287 호

1972. 9. 26.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편집: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보

차

례

이 항구보증은행에 있고

필립스는 영국에 있다.

1972. 3. 1.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공 고

72 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실시 3

제 215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및

자금지원요령공고 3

◎ 사 령 1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공 고

72 서울특별시시상주인구조사실시

서울시에서는 오는 10월 1일을 기하여
년과 같이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인구의 지역별, 변동과
성별 및 연령별 인구 구조를 파악하여
건설, 보건, 사회, 문화, 교육, 청소, 주택
등 일찬 새서울 건설을 위한 시정 제
반 정책의 기본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이제 본조사의 실시에 즈음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래
사항을 공고 합니다.

1. 조사일시 : 72. 10. 1 ~ 10. 10

(기준 10. 1. 0시)

2. 조사사항 : 성명, 성별 및 연령별 인구

3. 조사지역 : 서울시전역 (단, 국군의
주둔지 제외)

4. 조사대상 : 상시 거주하는자 (부재상
주자 포함)

5. 조사원 : 해당 동직원

6. 조사방법 : 전가구 방문 타계식
천수조사

1972. 9. 26.

서울특별시장

⑥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5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생산지 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공고

상공부고시 제 8290 호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생산지 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을 별첨과 같이 공고한다.

1972. 9. 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생산지 정
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별첨)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상공부고시 제
8290 호에 의하여 내수산업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 육성하
기 위하여 수출 품생산업체 또는 수
출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업체를
수출 품생산지 정업체 (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의 지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정대상) ①이 요령에 의한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 자로서 상공부장관이 정한 유
형 구분에 의한 제 1 및 제 2 유형에
분류된 품목 생산자 중 서울특별시에 공
장 등록을 하고 수출 품생산 및 수출산
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연간 수출 실적이 3만불 이상이거나
수출 계획이 5만불 이상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가입자로 하되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조합가입이 불가능
한 업종 생산자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시행령 제 4조 (업종 분류) 별표
의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
생산자는 협동조합 가입자가 아니라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광업, 운송업 및 상업 기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요령에 의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3 조 (지정절차) ① 이 요령에 의한 지정은 정기적으로 연 2회 (3월, 9월)로 하되 신청 일시, 신청서류, 신청절차 등 신청요령은 별도 공고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한 업체를 별표 1에 의한 선정기준과 평점방법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60점 이상인 업체만을 선정한다.

제 4 조 (지정공고) ① 시장은 전조에 의하여 선정한 업체를 즉시 지정 공고하고 이를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고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별표 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 5 조 (자금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지정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육성재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책명………수출전환업체지원자금
2. 자금구분………시설자금
3. 재원………상공부장관이 신규로 배정한 자금과 기 지원자금의 회수자금으로 한다.
4. 지원한도………기 지원자금의 대출 잔액을 포함하여 20,000,000 원 이내로 한다.

5. 지원비율………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6. 지원방법………지원대상, 지원신청절차 지원대상 결정방법 등 지원방법은 별도 공고로 정한다.

제 6 조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지정후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나. 지정후 매년 연간 수출실적이 5만불 이하인 업체
다. 육성결과 대기업으로 전환되어 계속 육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라. 소정서류 또는 보고서 제출등 이 요령에 의한 지정업체 운용에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에 불응하거나 기타 계속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② 지정의 취소는 관할 구청장의 별표 3호 서식에 의한 지정 취소 요구와 상공부장관의 지시 또는 기타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하여 계속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취소 공고하고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고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장은 전항에 의한 취소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취소업체에 대하여 기대출자금은 회수조치를 취하고 미 대출자금은 대출을 중지하

여야 한다.

④지정취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3월 9월)로 하되 폐업의 경우는 수시로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 (대체지정) ①전조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지정 취소수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새롭히 선정하는 수가 취소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전항에 의한 지정절차는 제 2조 제 3조 및 제 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선정 기준은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점 미만인 업체라도 지정할 수 있다.

③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변경된 업체를 대체 지정 공고하고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고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된 경우

나.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된 경우

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④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경 공고하고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고한다.

가. 업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나. 업체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생산품명이 변경된 경우

제 8 조 (사후관리) ①관할 구청장은 지

정업체의 효율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체에 대하여 보고서 기타 필요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할 구청장은 지정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별표 4호 서식에 의한 사후 관리카드를 업체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고) ①지정업체는 관할 구청장에게 별표 5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대 실적보고서를 익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별표 6호 서식에 의한 지정업체 사후관리 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별표 7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시책 성과분석표를 매분기초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요령 시행이전에 기히 지정된 지정업체는 이 요령에 의하여 지정될 것으로 본다.
3.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운공요령 (71.2.23자 공업 1332-1122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수출품생산지정업체 선정기준과 평점방법.

1. 수출실적 (연간)	50 점
가. 100,000 불 이상	50 점
나. 70,000 불 이상	40 점
다. 50,000 불 이상	30 점
라. 30,000 불 이상	20 점
마. 10,000 불 이상	10 점

수출실적확인서류

- 1) 외국환은행발행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및 수출용원자재 구매승인서에의 입금증명 포함)
 - 2) 세관발행의 수출완료증명서
 - 3) 세무서 발행의 수출업체에 대한 영업세 면세 증명서
- | | |
|-----------------|------|
| 2. 수출계획 | 30 점 |
| 가. 100,000 불 이상 | 30 점 |
| 나. 50,000 불 이상 | 20 점 |
| 다. 10,000 불 이상 | 10 점 |

수출계획확인 서류

- 1) 수출신용장
- 2)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수출계획서 또는 주문서
- 3) 상공부고시 제5064호 제2조 제6항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구매승인서

3. 외화가득율	20 점
가. 외화가득율 50 % 이상	20 점
나. 외화가득율 10 % ~ 50 % 까지	10 점

외화가득율 산출방법

$$\frac{\text{수출액} - \text{원자재수입액}}{\text{수출액}} \times 100$$

제 287 호

시

보

1972.9.26

14-7

(별표 2호서식)

제 호

수출품 생산지 정업체지정서

주 소

기업체명

대 표자

위 기업체를 서울특별시 수출품 생산지 정업체로 지정함.

19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4-8

제 287 호

시

보

1972.9.26

(별표 3호 서식)

수출 품 생산지 정업 체지 정취 소요 구서

1. 지정업체 개요

지정번호 제 호 (년 월 일)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생산품

2. 지정취소사유

3. 지정취소에 대한 의견

년 월 일

○ ○ ○ 구 청 장 인

1183

262

(별표 4호서식)

제정부문시설자금용사업체사후관리카드
(주출품생산지정업체)

1. 기업체 개요

기업체명	설정당시	변경후	회사설립년월일	19	년	월	
소재지	본사 공장	TEL TEL	설정당시 대표자성명 설정후	자본금(불입자본금)			
				기업형태	법인	법인(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응자상황

자금별	응자결정액	은행승인액	대출상황				미대출사유	비고
			대출일자	대출액	미대출액	계		

3. 응자금 상환상황

대출상황			회수계획			회수실적		회수부진사유	비고
대출일자	사채별	대출금액	상환예정일자	상환예정금액	회수일자	회수금액			

4. 시설상황

응(08) 전	응자내용							비고	
시설명	보유수	시설명	수량	단가	금액	완공예정일	진도	부진사유	

(25cm × 30cm)

14-10

※ 카드 이면

5. 생산상황

단위: 원

구분 연도별	용자전연도생산실적	용자												후		
		1/4			2/4			3/4			4/4			계		
계	회	실적	%	계	회	실적	%	계	회	실적	%	계	회	실적	%	계

6. 수출상황

단위: \$

구분 연도별	용자전연도생산실적	용자												후		
		1/4			2/4			3/4			4/4			계		
계	회	실적	%	계	회	실적	%	계	회	실적	%	계	회	실적	%	계

7. 고용상황

구분 성별	용자				전				용자				후			
	기	술	직	기	타	계	기	술	직	기	타	계	기	술	직	기
남																
여																
합계																

8. 사후관리상의 참고사항 및 기타사항

(25cm x 30cm)

263

1185.

264

1183

(별표5호서식)

사업계획대실적보고

1. 생산상황

용자전년도말 생산실적	품 목	용자후생산상황			
		월별	계회	실적	%
월					:

2. 수출상황

용자전년도말 생산실적	품 목	용자후수출상황			
		월별	계회	실적	%
\$					

3. 고용효과

구분 성별	용자전			용자후		
	기술자	기타	계	기술자	기타	계
남						
여						
합계						

4. 재정자금용자 및 상환상황

시책별(자금별)	용자년월일	용자액	상환액	상환일자	잔액

회사

대표

인

14-12 . 제 287 호

시 . 보

1972. 9. 26.

(별표 6 호서식)

분류번호 : 1332-

197

경 유 : 보고통제관

발신

구청장

1

수신 : 서울특별시장

승인 번호	공업 제 3 호
보고 일	익 월 5 일

수출품생산지정업체사후관리보고서 (월분)

(별표 7호서식)

14-13

분류기호 :

수신 :

제목 :

중소기업육성시책성과분석표

19

만신 ○○○구청장

승인번호 : 7508-4-16-D

책별 체명	기업 소재지	대표자	생산상황						수출상황						고용효과						문설업체에 대한조치			
			전년도		금년도		/4분기		전년도		금년도		/4분기		전년도		금년도		/4분기					
			실적	목표	월중	월중	월중	계	실적	목표	월중	월중	월중	계	실적	목표	월중	월중	월중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서울특별시장귀하

중소기업육성시책성과분석자료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7508-4-16-D
1971. 11. 승인

14-14

제 287 호

시

보

1972. 9. 26.

사령

◎ 1972. 9. 21.

민방위과 지방행정주사보 문
관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2. 9. 23.

박찬종

기한부공무원(지방토목기원
보 김호정의 군복무후직기
간증)을 명함。
5급 3호봉을 급함。
전설국 토목과 근무를 명함。

권영운

조선부 지방통신기원보에 임함。
계획운영과 근무를 명함。

한 철수

지방전기기원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정옥자

조선부 지방간호 기원보에
임함。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나남근

지방건축기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도국 시설과 근무를 명함。

노재영

조선부 지방약무기사에 임함。

영등포구 보건소 근무를 명
함。

서울특별시장